

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12.28]
(제정) 2022.12.28 조례 제1875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여성가족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940-868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스토킹행위"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 - 나.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"주거등"이라 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 - 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"물건등"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 - 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
 - 마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
2. "스토킹범죄"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3. "피해자"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'시행계획'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 2.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 3.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4.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 등)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. 단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2.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
 3.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
 4.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, 피해지원,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기관,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,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누설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2. 12. 28. 조례 제187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